

예산 편성기준 및 증빙서류

□ 예산편성 기준

- ① 직접경비 : 교육, 자료발간, 행사 등 사업 직접 소요비용
 - 세부 내역은 최대 아래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
 -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역은 실 소요경비로 편성하며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
 - 교육 시 식사비와 자료집은 참가자 자부담으로 납부하되, 참가비는, 기관의 출입금 내역 및 영수증 사본 제출
- * 포럼, 세미나 등 참가자 인원 사전파악이 어려운 행사의 경우 자료집 지출가능
- ② 인건비 :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
 - 인건비는 직무분석을 토대로 투입시간을 산정하여 계상
 - 직접 사업비의 20%이내 편성가능하며 인원제한 없음
- ③ 기술료 : 사업수행 주체의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, 기술개발비, 이윤 등을 포함하며, 인건비의 15% 편성

<강의료 지급기준>

구분	지급기준	지급액(원)	지 급 대 상
1급	1시간당 /1회당(행사)	192,000	○1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○전·현직대학교 총장, 전·현직정부기관 사장 및 원장 ○전·현직 국회의원 및 대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자 ○언론기관의 편집국장급 이상 ○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(석사(2년) 및 박사(5년) 학위 소지자는 경력으로 합산) ○특급기술자로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○기타 이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2급	1시간당 /1회당(행사)	150,000	○2, 3급 상당 이상 공무원, ○박사학위를 소지한 4·5급 공무원, ○대학 전임강사 이상 ○기업·기관·단체의 임원 및 중역, ○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7년 이상 경력 가진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○신문·방송기자 ○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(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, 5년을 경력으로 합산) ○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○특급기술자로 해당분야 5년이상 경력자 ○기타 이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3급	1시간당 /1회당(행사)	120,000	○4급 이하 공무원, ○기업·기관·단체의 부장급 이하, ○정부 과장급 이하 등 상기 1, 2급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자

<행사비 지급기준>

(단위: 회)

발표	토론	사회
300,000원	200,000원	200,000원

<자료발간 원고료 지급기준>

구분	지급기준	지급액(원)	지 급 대 상
1급	장당	15,000원	○ 1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○ 전·현직대학교 총장, 전·현직정부기관 사장 및 원장 ○ 전·현직 국회의원 및 대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○ 언론기관의 편집국장급 이상 ○ 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(석사(2년) 및 박사(5년) 학위 소지자는 경력으로 합산) ○ 특급기술자로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○ 기타 이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2급	장당	13,000원	○ 2, 3급 상당 이상 공무원, ○ 박사학위를 소지한 4·5급 공무원, ○ 대학 전임강사 이상 ○ 기업·기관·단체의 임원 및 중역, ○ 신문·방송기자 ○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(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, 5년을 경력으로 합산) ○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○ 특급기술자로 해당분야 5년이상 경력자 ○ 기타 이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3급	장당	10,000원	○ 4급 이하 공무원, ○ 기업·기관·단체의 부장급 이하, ○ 정부 과장급 이하 등 상기 1, 2급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자

<인건비 지급기준>

(1일 지급액, 단위: 원)

구 분	1 급	2 급	3 급	4 급
지 급 액	165,000	135,000	110,000	90,000

구 분	인건비 등급 기준
1 급(A)	○ 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(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, 5년을 경력으로 합산) 또는 아래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○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○ 4년제 대학 정교수로 3년 이상 경력자 ○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8년 이상 경력자 ○ 민간 상장·등록기업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로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인 자 ○ 기술사(건축사)로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○ 특급기술자로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
2 급(B)	○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(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, 5년을 경력으로 합산) 또는 아래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○ 4급 이상 공무원 ○ 4년제 대학 정교수 또는 3년 이상 부교수의 경력자 ○ 공공기관의 1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○ 민간 상장·등록기업 임원 경력자로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되는 자 ○ 기술사(건축사)로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○ 특급기술자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
3 급(C)	○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(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, 5년을 경력으로 합산) 또는 아래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○ 5급 이상 공무원 ○ 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2년 이상 조교수의 경력자 ○ 공공기관의 2,3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의 경력자 ○ 민간 상장·등록기업 소속으로 해당분야 업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(업무연관 부서 근무경력기준) ○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 ○ 특급기술자
4 급(D)	○ 3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